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인력 확보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인력 기준 개정(별표2)

- 1)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추가하여 인력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 2)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도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참고하여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 및 제1호다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른 가정
전문간호사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호에 따른 호스
피스전문간호사(이하 “호스피스전문간호사”라 한다)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양
전문간호사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 1)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전문의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2)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3)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병동 당 1급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 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호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이하 “호스피스전문간호사”라 한다)
 -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 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 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교육이수 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76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병동	1개 이상	병동 당 병상 수는 29병상 이하로 할 것
입원실	3개 이상	1) 입원실 당 병상 수는 4병상 이하로 할 것 2) 1인용 입원실은 1개 이상 둘 것 3) 입원실 면적은 1병상 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흡인기(吸引器) 및 산소발생기, 욕창방지용품, 휠체어, 이동형 침대, 손씻기 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5)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입원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간호사실	1개 이상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처치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임종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가족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목욕실	1개 이상	목욕실 바닥은 문턱이 없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2개 이상	남성용 또는 여성용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동시설	1개 이상	2층 이상인 병동에는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안전시설		1) 입원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간호사실로 연락가능한 통신장치

		를 각각 설치할 것 2) 병동의 복도·계단·화장실 및 목욕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손잡이를 각각 설치할 것
--	--	--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사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이동차량	1대 이상	가정 방문용 차량을 구비할 것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임종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운영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인력 중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만 전담할 것. 다만,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당직의사 근무 체계와 간호사의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다.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상담실에 비치할 것
라. 제1호에 따른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간 4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보수교육을 받을 것

비 고

1.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나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

- 게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나목3)·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2. 입원형·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겸임배치할 수 있다.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지사가 있는 때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4.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5.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입원형·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임종실 및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임종실 및 상담실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가정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위 표 제3호다목에 따른 임종실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1인용 입원실을 임종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2) <u>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u>	[별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2) <u>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u> 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호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이하 “호스피스전문간호사”라 한다)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 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2) <u>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u>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2) <u>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u> 가) <u>호스피스전문간호사</u>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u>종양전문간호사</u> 다) <u>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512